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
 - 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구미경 의원입니다.

- □ 본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,

서울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,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자발적으로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함입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	
- 먼저 조례안의 제6조의2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을 신설하여	
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'청렴도 평가 및 조사' 사업을 추가하였	
으며,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	
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	
- 또한 안 제6조의3(청렴 포상 등)을 신설하여 청렴문화 조성 및	
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, 공직자에 대해 표창 및	
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	
- 마지막으로 안 제23조(청렴교육 및 홍보 등)에서 청렴문화 확산	
을 위한 부패예방 청렴활동의 범위를 서울시 조직내에서 투자,출	
연기관 및 자치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.	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	
니다.	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	
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	
다.	
□ 감사합니다.	